

지정번호 : 제	호
----------	---

지역문화예술교육지원센터 지정서

1. 지역센터의 명 칭 :
2. 지역센터의 대표자 :
3. 지역센터의 소재지 :

「문화예술교육 지원법」 제10조제6항 및 동법 시행령 제9조제3항에 따라 지역문화예술교육지원센터로 지정합니다.

년 월 일

문화체육관광부장관 (직인)